#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47

발의연월일: 2020. 7. 21.

발 의 자:김승수·배현진·이명수

김예지 · 홍석준 · 박성중

이종배 • 이주화 • 이종성

최형두 · 김용판 · 김성원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과 선수 인권보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
무엇보다 스포츠 인권피해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와 관계기관 담당자의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 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됨.

또한 해당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과 선수들이 맺은 계약서에 선수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선수 간 표준계약서의 보급 필요성이 제기됨.

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실업팀 선수뿐만 아니라, 대학에 속한 운동부 선수들의 경우에도 스포츠 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. 201 9년 인권위 조사결과 대학교 운동선수 응답자 4,924명 중 1,613명(3 3%)이 신체폭력을 경험했고, 470명(10%)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함.

하지만 현재 일부 대학에 소속된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, 필요시 일부기관에 위탁해서라도 인권교 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.

이에 선수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은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 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, 국가와 지자체는 체육 분야에 대한 표준 계약서 체결을 보급하도록 하며,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을 설치하고, 대 학 운동부의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 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1까지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"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"를 "예방교육 및 선수의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"로 한다.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을 각각 제18조의10 및 제18조의11로 하고,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6까지를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8까지로 하며, 제18조의3을 제18조의4로 하고,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18조의4(종전의 제18조의3)제3항제4호 중 "예방교육"을 "예방교육및 선수의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"으로 하고, 제18조의5 및 제1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표준계약서의 보급) ① 국가는 선수가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

② 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4의제3항제4호 중

제18조의5(스포츠인권옴부즈만의 설치) ① 스포츠인의 체육활동 또는

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 구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을 각 지자체별로 약간명을 두어 시·도체육회에 파견하여 근무한다.

- ②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의9(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내 소속 선수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	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
일부개정법률안	일부개정법률안
제11조(체육지도자의 양성) ① ~	제11조(체육지도자의 양성) ① ~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	3
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	- 예방교육 및 선수의 심리치
<u>다</u> .	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
	육이 포함되어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18조의3(표준계약서의 보급)
	① 국가는 선수가 체육단체 및
	경기단체와 대등한 입장에서
	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
	도록 체육 분야에 관한 표준계
	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
	<u> 여야 한다.</u>
	② 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
	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
	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
	광부렁으로 정한다.
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	제18조의4(스포츠윤리센터의 설
립) ① ~ ② (생 략)	립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	③
호의 사업을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 4.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

5. (생략) <신 설>

제18조의4(고발 및 징계요구) (생 략)

제18조의5(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) (생 략)

제18조의6(성폭력 등 폭력 예방 제18조의8(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) (생 략)

<신 설>

교육 및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 5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5(스포츠인권옴부즈만의 설치) ① 스포츠인의 체육활동 또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위해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스포 츠인권옴부즈만을 각 지자체별 로 약간명을 두어 시·도체육회 에 파견하여 근무한다.

②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6(고발 및 징계요구) (현 행 제18조의4와 같음)

제18조의7(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) (현행 제18조의5와 같 음)

교육의 실시) (현행 제18조의6 와 같음)

제18조의9(성폭력 등 폭력 예방

부장관은 「고등교육법」에 따 른 대학내 소속 선수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 육을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 여 실시할 수 있다.

교육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의10(장려금의 환수) (현행 제18조의7와 같음)

제18조의8(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제18조의11(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축·운영 등) (현행 제18조의8와 같음)

제18조의7(장려금의 환수) (생 략)

축·운영 등) (생 략)